

인천지방법원 2023. 4. 21 선고 2022가합590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23. 3. 31.

판결 선고2023. 4. 21.

주 문

1.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7. 15.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. 7. 21. 접수 제324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A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.

2. 피고 B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.

재판장판사이동기

판사김현준

판사김혜림

별지